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49
----------	------

제출연월일 : 2026. 3.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위탁사무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 2.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목적

###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위탁계획)
-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 지침 「2025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매뉴얼」

### ○ 추진 목적

-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공개모집)을 추진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돌봄환경과 보호·치료, 양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심신회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

## 3. 위탁시설 개요

### ○ 개요

시설명	소재지	면적	정원	종사자	운영시간	현)위·수탁기간
학대피해아동쉼터 (도담임꿈터)	비공개	116.1㎡	7명	6명	24시간	2021. 10. 7. ~ 2026. 10. 6. (5년)

※ 종사자 수: 초단기 근로자(심리치료사) 1인 포함

## 4. 위탁 내용

- 학대피해아동 보호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 및 공개모집에 의한 종사자 채용, 종사자 복무규정 마련, 종사자 교육 안내
- 위생·안전 관리
  -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위생관리, 안전교육, 화재 예방 및 피난대책 수립, 시설 안전 점검, 보험 가입
- 시설운영 관리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운영규정 수립, 각종 사업계획 수립
-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예산, 결산, 회계,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문서관리
  -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관련 서식을 활용한 문서 작성 및 관리

## 5. 위탁기간 : 2026. 10. 7. ~ 2031. 10. 6. (5년)

## 6.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격: 비영리법인
-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위원구성: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9인 이하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함

구분	총점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영역	100	운영체의 공신력 (20)	시설장의 전문성 (10)	운영체 자부담 (5)	시설장의 관내거주 (5)	운영계획 (40)	운영의지 (10)	지역발전 기여도 (10)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산지원: 354,456천원 [국 122,158천원, 도 106,157천원, 시 126,141천원]

(기준: 2026년)

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계	354,456천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305,39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6인 급여: 188,835천원</li> <li>· 종사자 5인 퇴직적립금: 16,250천원</li> <li>· 종사자 6인 사회보험금: 21,950천원</li> <li>· 사무운영비: 36,718천원</li> <li>· 교육비 및 사업비 등: 41,645천원</li> <li>※ 초단기 근로자(심리치료사) 1인</li> </ul>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16,65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부식비: 10,080천원</li> <li>· 피복비: 2,400천원</li> <li>· 위기아동관리수당 등: 4,178천원</li> </ul>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	18,000천원	· 명절수당 등: 종사자 5인 X 2회 X 1,800천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1,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종사자 4인 X 12월 X 200천원</li> <li>· 5년 미만 종사자 1인 X 12월 X 150천원</li> </ul>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0천원	· 종사자 5인 X 12월 X 50천원

##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운영 사무의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③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함
-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방식은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을 예방하며, 서비스 공급시장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함

-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분석 결과 공공성(1)에 비해 효율성(5)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방식 수행 적정하기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함이 타당함

	분석기준	분석내용	결과	비고
공 공 성	㉠ 서비스 중요성	·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통	· 학대피해아동에게 돌봄서비스 및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임
	㉡ 서비스 수혜대상	· 한정적인 주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주민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수혜대상 주민의 범위	낮음	· 수혜대상이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으로 한정적임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보통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사업으로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이 확보되며,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따른 신고 증가로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
	㉣ 서비스 중단 파급효과	·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높음	· 하남시에 여아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로 서비스 중단 시 피해가 큼
효 율 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높음	· 이용대상이 심리적 문제를 겪는 아동이므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높음	· 민간위탁의 경우 보조금 외에 자부담, 후원금 등 민간자원 활용이 가능하여 시 예산 절감 가능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높음	· 추진실적 확인 및 만족도 평가로 사업성과 측정 용이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높음	· 수탁자 선정을 위한 법·인간 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관리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높음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의 선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가능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10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안) 참고

##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 1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 8. 4.>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부칙 <제20883호, 2025.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3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제5장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6. 3. 22.>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18.]

## 4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 제정) 2001.04.16 조례 제609호  
(전부개정) 2019.10.01 조례 제1716호  
(일부개정) 2021.01.12 조례 제1879호  
(일부개정) 2021.03.12 조례 제1900호 타 조례개정  
(일부개정) 2023.05.01 조례 제2168호

**제6조(위탁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목적, 필요성, 위탁기간 및 조건
2. 범위, 내용 및 타당성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

## 5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7.]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37호, 2023. 3. 7., 전부개정]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07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위탁

- 위탁대상 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은 위·수탁 불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 7. (생략)

- 위탁계약기간 :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수탁자의 자격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속함)
- ※ 다만,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시행('24.1.1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였던 비영리민간단체가 계속 수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도 가능

※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선정절차

① 공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신청서 제출(법인) ⇨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계약 체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⑥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⑦ 위탁 지정서 발급(시·도 또는 시·군·구 → 수탁기관)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 ※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필요시 공개모집 관련 일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가능)

- 선정기준의 설정

- ※ 수탁자 선정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선정 전에 공개하여야 함

●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법인의 정관(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함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함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위탁자의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05 종사자 기준

### ■ 종사자 배치기준

#### ○ 종사자 배치

- 시설장 1명
- 보육사 4명
- 임상심리상담원 1명

\* 직원채용 관련하여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 원장 및 보육사 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간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